

의안번호	제 51 호
의 결 연 월 일	2006년 월 일 (제 255 회 )

##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6년 11월 13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
----------	----

제출연월일 : 2006년11월13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이유

- 도정실황의 입체적 영상홍보화 및 유익한 영상콘텐츠 제작·공급 등을 목표로 추진중인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을 전문인력과 방송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 양질의 대도민 멀티미디어 영상서비스와 지역내 영상미디어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정보통신담당관실 위탁사무에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 신설
  - 인터넷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영상콘텐츠 제작·공급
  - 도정실황 입체적인 영상 홍보
  - 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 등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민간위탁사무중 일련번호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2호 내지 제9호로 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일련번호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실과	일련번호	위탁대상사무명	위탁대상기관	근거 및 적용법규
정보통신 담당관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터넷 디지털방송 사업에 관한 사항</li><li>· 인터넷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li><li>· 영상콘텐츠 제작·공급</li><li>· 도정실황 입체적인 영상 홍보</li><li>· 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 등</li></ul>	(재단법인)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	지방자치법 제95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 민간위탁사무

현행					개정안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위탁대상사무명	위탁대상 기관	근거 및 적용법규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위탁대상사무명	위탁대상 기관	근거 및 적용법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정보통신 담당관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디지털방송 사업에 관한 사항</li> <li>·인터넷 디지털방송 시스템 구축 및 운영</li> <li>·영상콘텐츠 제작공급</li> <li>·도정실황 입체적인 영상 홍보</li> <li>·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 등</li> </ul>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지방자치법 제95조
	1~8	(생략)				2~9	(현행과 같음)		

##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